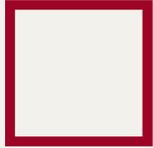




제 11 장

국선변 호제도

변호사징계위원회
변호사징계위원회
변호사징계위원회
변호사징계위원회
변호사징계위원회



제11장 국선변호제도¹⁵

1. 개요

국선변호제도란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로서, 그 대상에 따라 필요적 국선변호와 임의적 국선변호로 구분된다.

1) 필요적 국선변호 대상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한다.

- ①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 ②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 ③ 농아자인 때
- ④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 ⑤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 ⑥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 ⑦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 ⑧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2)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

피고인이 빈곤 기타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다. 빈곤 기타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나, 법원은 그 사유를 점점 넓혀가고 있다. 종전에는 국선변호인을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였으나, 2003. 3. 1.부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택제도의 도입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부별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중에서 국선변호를 원하는 변호인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선정 청구를 할 수 있다.

15 법원행정처 제공 자료

2. 국선변호인의 선정

1) 신청인 및 신청방법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분의 송달과 함께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도 함께 하고 있는데, 특히 피고인이 빈곤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고지서 뒷면에 인쇄되어 있는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를 작성하여 고지서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안에 법원에 제출한다.

피고인 이외에도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 역시 독립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선변호인

국선변호인은 재판부별로 전속되어 있으므로 그 전속변호인이나 그 외 변호인들 중에서 원하는 변호인이 있으면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에 기재할 수 있다. 다만, 변호인의 사정 등에 따라 원하는 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을 수 있다.

국선변호인은 피고인 1인에 대하여 변호인 1인을 선정함이 원칙이지만, 공동 피고인이 있는 경우 공동 피고인들 사이에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하지 않을 때에는 그 공동 피고인들에 대하여 동일한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국선변호인은 변호사나 사법연수생 중에서 선임하고, 그 보수는 법원에서 지급한다.

3. 소년보호사건의 국선보조인 제도

1) 개요

소년법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형사소송법상의 국선변호제도에 상응하는 국선보조인 제도를 도입하였다(소년법 제17조의2).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위탁소년에 대하여는 필요적으로 국선보조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위탁소년이 아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빈곤 기타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국선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

국선보조인으로 선정된 변호사 및 청소년전문가(전문의, 복지사, 청소년지도사 등)가 재판 전 수용시설을 방문해 이뤄지는 상담·접견 시 가정환경적 원인, 비행하게 된 주요 원인, 비행 후 반성 여지, 추후 진로문제, 전문가로서의 청소년에 대한 의견 등을 세심히 상담한 후 재판장에게 변론하게 된다.

2) 지방변호사회 별 2010년도 국선보조인 현황

[단위 : 명]

서울회	34	부산회	6
경기북부회	0	울산회	0
인천회	38	경남회	15
경기중앙회	32	광주회	24
강원회	7	전북회	0
충북회	10	제주회	5
대전회	9		
대구회	0	합계	180

3) 2009년 처리건수

[단위 : 건, 명]

법원	국선보조인 선임	
	건수	인원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1	1
영덕지원	1	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1	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11	11
순천지원	1	1
합계	17	17

【출처】 사법연감, 법원행정처

*1심 사건 수로 2심과 3심은 국선보조인 선임건수가 없음.

4.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가. 국선전담변호사 제도의 도입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란 특정 재판부의 형사사건을 국선변호 업무만을 전담하는 변호사에게 배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제도로서, 국선전담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배정된 사건의 국선변호 업무만을 수행하여야 하고,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받게 된다.

국선변호제도는 형사재판을 받게 된 국민들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소중한 버팀목으로, 이를 더욱 개선하여 충실한 변호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국선전담변호사 제도이다.

동 제도는 2004년 9월 1일 시범실시를 거쳐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2006년 8월 17일 형사소송규칙 개정으로 국선전담변호사 제도의 근거규정이 마련되었다.

형사소송규칙 제15조의2(국선전담변호사)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그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둘 예정인 변호사를 포함한다) 중에서 국선변호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

나. 국선전담변호사 수

[2009년 말 기준]

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수	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수
서울고등법원	5	성남지원	4
대전고등법원	1	안산지원	4
부산고등법원	1	춘천지방법원	3
광주고등법원	1	대전지방법원	6
서울중앙지방법원	25	청주지방법원	2
서울동부지방법원	5	대구지방법원	4
서울남부지방법원	7	대구서부법원	2
서울북부지방법원	5	부산지방법원	6
서울서부지방법원	6	울산지방법원	2
의정부지방법원	5	창원지방법원	1
고양지원	3	광주지방법원	2
인천지방법원	7	전주지방법원	2
부천지원	2	제주지방법원	2
수원지방법원	7	합계	120

【출처】 대법원

다. 국선전담 사건처리 현황 (제1심, 접수일 기준)

[2010년 6월 말 기준 / 단위 : 건]

지방법원(지원 포함)	국선전담 선임 피고인 수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6월
서울중앙지방법원	1,887	2,691	3,047	3,974	1,519
서울동부지방법원	358	777	933	977	461
서울남부지방법원	425	527	908	955	390
서울북부지방법원	310	503	633	864	319
서울서부지방법원	363	748	887	1,160	455
의정부지방법원	189	314	441	1,241	367
인천지방법원	1,132	1,337	1,570	1,551	581
수원지방법원	550	482	1,116	2,620	1,137
춘천지방법원	370	597	443	473	178
대전지방법원	1,108	845	1,153	884	254
청주지방법원	192	277	340	231	66
대구지방법원	949	513	517	722	310
부산지방법원	1,061	759	815	881	526
울산지방법원	209	193	203	254	49
창원지방법원	121	407	436	472	189
광주지방법원	644	593	376	350	51
전주지방법원	230	262	259	152	87
제주지방법원	386	398	450	436	137
합계	10,484	12,223	14,527	18,197	7,076

【출처】 대법원